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이재정・박지원・민홍철

강준현 • 박홍배 • 민병덕

임호선 · 안태준 · 복기왕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,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,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,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.

그러나 채용 시 임금, 근로시간,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,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 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 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.

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 제목 중 "채용과정의"를 "근로조건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가 접수되면 구직자에게 채용 시 임금 수준, 소정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채용일정 및 <u>채용과정의</u>	제8조(채용일정 및 <u>근로조건 등</u>
고지)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	의 고지) ①
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	
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	
을 알려야 한다. <u>이 경우 고지</u>	<u><</u> 후단
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	<u>삭제></u>
<u><신 설></u>	② 구인자는 채용서류가 접수
	되면 구직자에게 채용 시 임금
	수준, 소정 근로시간 및 복리후
	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	<u>항을 알려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지
	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